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공개, 2번 안건)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2026. 5. 21.

관 계 부 처 합 동

1 「물가안정법」상 물가안정조치 현황

□ 긴급한 경제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부족 및 가격의 급격한 상승 우려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조치 발동 가능

① **최고가가격제(제2조)**: 중요 물품의 가격에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위반시 과징금 부과(실제 거래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액)

② **긴급수급조정조치(제6조)**: 물품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위반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생산, 공급·출고, 수출입 조절, 운송·보관·양도, 유통 개선 등에 관하여 지시

③ **매점매석금지(제7조)**: 폭리목적의 매점 또는 판매기피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 현행 「물가안정법」상 물가안정조치 >

구 분		①최고가가격 지정(제2조)	②긴급수급조정조치(제6조)	③매점매석금지(제7조)
주 체		- 주무부장관	- 주무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사 례		- 석유제품*(‘26.3~) - 무연탄·연탄(‘89년~)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시행	- 석유화학제품(‘26.4~‘26.6) - 나프타(‘26.3~‘26.8)	- 석유화학제품(‘26.4~‘26.6) - 주사기·주사침(‘26.4~‘26.6) - 요소수·요소(‘26.3~‘26.5) - 석유제품(‘26.3~‘26.7)
형사 처벌	벌칙	-	- 징역(3년 이하) - 벌금(1억원 이하)	- 징역(3년 이하) - 벌금(1억원 이하)
	몰수 (추징)	-	-	- 물품 몰수 (또는 가액 추징)
행정상 제재	과징금	거래가격 - 최고가격	-	-
	이행 강제금	-	-	-

※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원가·경영상황 보고, 자료제출명령 등(보고 및 검사, 제16조)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제29조)

2 문제점

1 신속한 유통 촉진을 위한 매점매석금지 등의 실효성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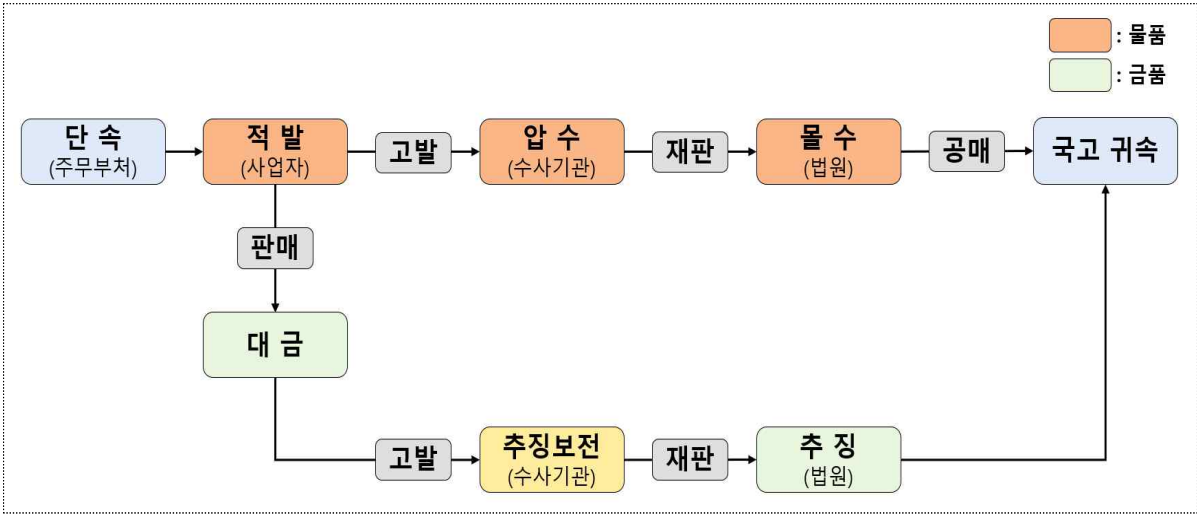
□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제9조)을 통해 보관기준의 준수 등을 명할 수 있으나,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 부재*

* 현재는 시정명령에 따라 판매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한계
 식약처는 4.20~30일 주사기 판매업체 단속 → 시정명령(85개 업체) 후 고발(15개 업체)

□ 압수한 물품은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 이후 공매 가능하여 시장 공급까지 상당시간* 소요

* 주무부장관 고발 → 경찰 압수(영장 필요) → 검사 기소 → 법원 재판 → 몰수 선고 → 공매

< 현행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의 처분과정 >



2 형사처벌* 외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제재수단 강화 필요

* 현재는 징역, 벌금, 몰수·추징 중심으로 규율

□ 매점매석금지 위반 등의 주된 유인은 경제적 이익 추구이므로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

⇒ 물가안정조치 위반시 행정상 제재(이행강제금, 과징금), 매각특례 등 신설하여 수급불안 물품 신속 유통 촉진 및 불법이익 환수

3 개선방안

① 신속 단속·가액 추징 활성화 즉시 추진('26.5월~)

- **(신속 단속)**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제16조)을 관세청장에게 위임*(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

*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물품의 단속권한을 주무부장관 → 관세청장에게 위임

- **(가액 추징)**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하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前 추징보전' 적극 활용

< 추징보전명령 제도 >

- ▶ **(개요)** 추징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수익 또는 소유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대상재산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특정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
- ▶ **(근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 몰수특례법을 근거로 **장기 3년 이상의 중대범죄** 등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가능
- ▶ **(절차)** 범죄수익 추적 → 대상재산 확인 → 보전명령 신청(경찰)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② 공급부족 우선 해소를 위해 신속 유통 강제수단 도입(물가안정법 개정)

- **(이행강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 및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 물품의 처분을 명령하고, 이행기한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처분할 때까지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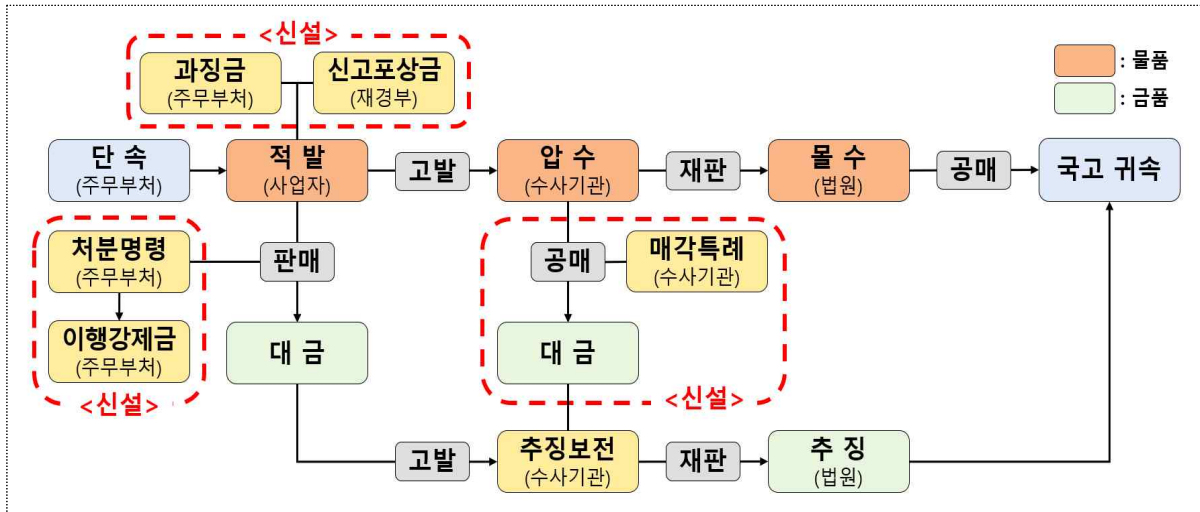
- **(매각특례)** 긴급한 공급 필요시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

③ 불법이득 박탈, 신고 장려 등 경제적 유인구조 재설계(물가안정법 개정)

-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금전적 제재 부과
 - ②긴급수급조정조치, ⑥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 (신고 활성화) ①최고가가격제, ②긴급수급조정조치, ⑥매점매석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 *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시 재원 활용 추진
 -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금전적 제재(과징금, 가산금 등)와 직접 연계되는 신고 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

<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의 처분 개선방안 >



4 향후 계획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6.5월~)
 - *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6.8월~)

참고 1

물가안정법상 물가안정조치

구 분	최고가격 지정(제2조)	긴급수급조정조치(제6조)	매점매석금지(제7조)
주 체	- 주무부장관	- 주무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형 식	- 주무부처 고시	- 주무부처 고시	- 재경부 고시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 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유사한 긴급사유로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 특정한 물품 수급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당해 품목 생산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소비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 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유사한 긴급사유로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재경부장관이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용역 대가 - (범위) 생산·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및 지역별 지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해당 물품의 사업자, 수출입, 운송, 보관업자 - (조치) 5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다음사항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생산계획 수립·실시·변경 ②공급·출고 ③수출입 조절 ④운송·보관·양도 ⑤유통조직 정비, 유통단계 단순화, 유통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매점매석 행위의 구체적 유형·기준은 고시로 규정
벌 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이득 과징금 (실거래 가격-최고가격) * 재경부장관이 부과, 국세청장에 징수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주무부장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물품 몰수 및 추징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제품*(‘26.3~) - 무연탄·연탄(‘89년~)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제품(‘26.4~‘26.6) - 나프타(‘26.3~‘26.8) - 요소(‘21.11~‘22.3) - 요소수(‘21.11~‘22.3) - 마스크(‘20.2~‘21.5) - 마스크 필터(‘20.3~‘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제품(‘26.4~‘26.6) - 주사기·주사침(‘26.4~‘26.6) - 요소수·요소(‘26.3~‘26.5) - 석유제품(‘26.3~‘26.7) - 석유제품(‘22.12~‘26.1) - 요소수·요소(‘21.11~‘22.2) - 마스크(‘20.2~‘21.7) - 담배(‘14.9~‘15.1) - 석유제품(‘08.12~‘09.3) - 고철·철근(‘08.3~‘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최고가액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액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재정경제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2(몰수와 추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